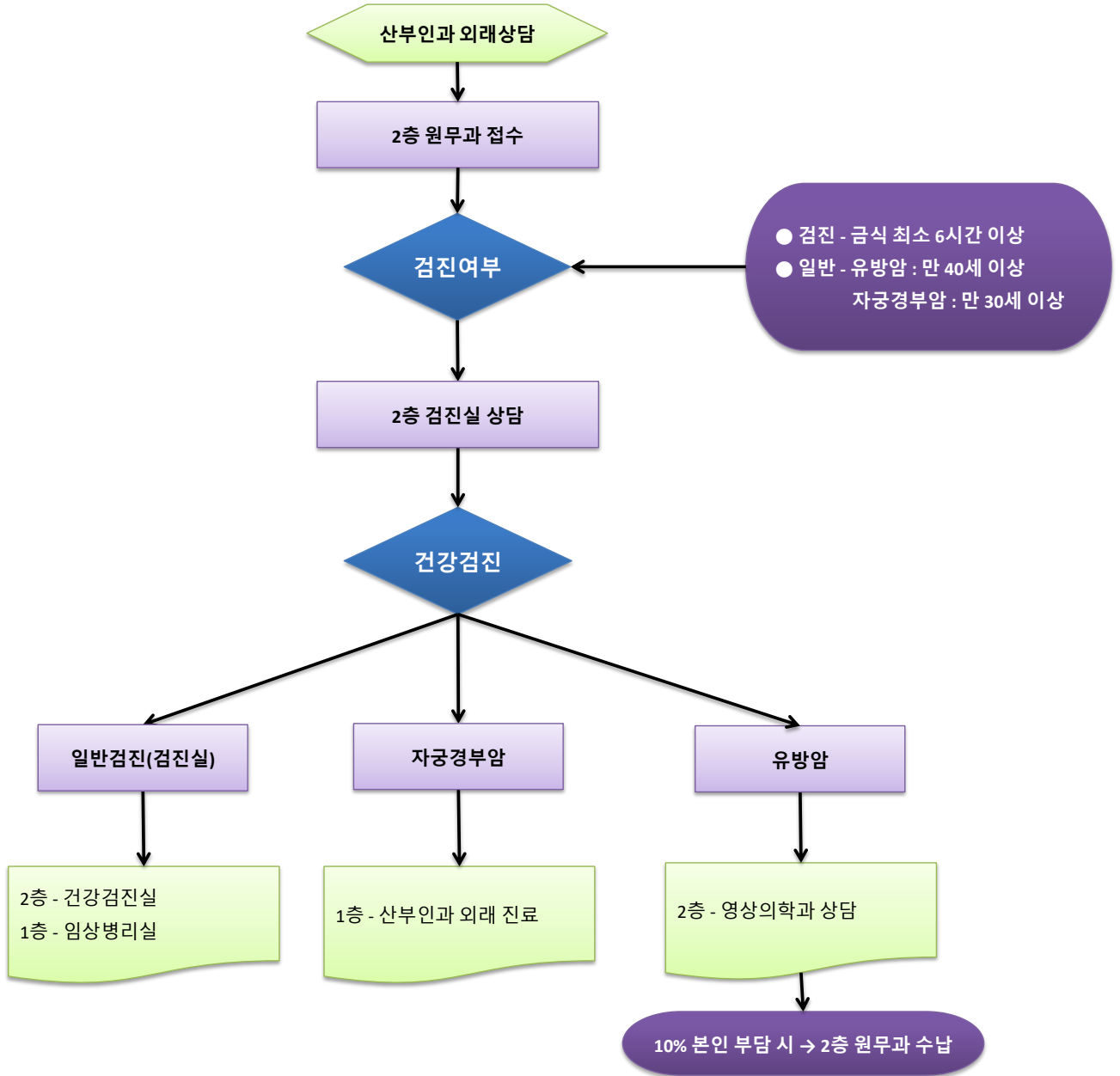


건강검진 안내 순서도



- ① 검진 받은 일로부터 결과 통보 15일 이내(우편발송 등)
일반검진 - 2년 1회 실시(사무직 이외의 근로자 1년 1회)
- ② 결과가 정상이라도 과겨력,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함
- ③ 문진표에 메일(E-mail) 주소를 기재하고 정보 수신을 동의하시면 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